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7)

상정

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7)

완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 상 설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일부개정(법률 제9575호, 2009. 4. 1. 공포 · 2009. 10. 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1736호, 2009. 9. 21. 공포 · 2009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임원의 임면, 임기 등의 규정을 개정 · 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 우리시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을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단의 이사장·감사·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및 직무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도록 함. (안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·제7조의3·제7조의4 신설)
-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함.(안 조례 제8조제2항)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 시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,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.(안 조례 제9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.	○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”를 “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임원)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·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의2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제7조의3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, 당연직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한 부천시의 부서 담당과장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

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7조의4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따른다.

제8조의2제2항 중 “2인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

③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”을 “「지방공기업」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 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

2.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

3. 불법주·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

4. 체육시설관리운영

5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

②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부

천시 세입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사업년도”를 “사업연도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“3월이내”를 “3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각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각 호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사업년도”를 “사업연도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6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일부개정(법률 제9575호, 2009. 4. 1. 공포·2009. 10. 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1736호, 2009. 9. 21. 공포·2009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임원의 임면, 임기 등의 규정을 개정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공단의 이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및 직무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도록 함.(안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·제7조의3·제7조의4 신설)
- 나.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

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함.(안 조례 제8조제2항)

다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 시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,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.(안 조례 제9조제1항)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”를 “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임원)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·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의2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제7조의3(이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, 당연직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한 부천시의 부서 담당과장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7조의4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따른다.

제8조의2제2항 중 “2인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

③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”을 “「지방공기업」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-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-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제목 중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임·면”을 “임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 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
2.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
3. 불법주·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
4. 체육시설관리운영

5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

②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사업년도”를 “사업연도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“3월이내”를 “3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각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각 호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사업년도”를 “사업연도”로 한다.

제25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

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 (자본금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</p> <p>제5조 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 (생략) 12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>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에 따라 -----</p> <p>제4조(자본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-----</p> <p>제 5 조 (정 관) ① ----- -----각 호-----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 12. 그 밖에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36 913 427 952">< 신설 ></p> <p data-bbox="236 1480 826 1921">제8조 (이사장추천위원회)①공단이 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시장,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p>	<p data-bbox="871 342 1430 555">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 data-bbox="871 566 1430 779">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 data-bbox="871 790 1430 898">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</p> <p data-bbox="836 909 1430 1238">제7조의4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 data-bbox="871 1249 1430 1357">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p> <p data-bbox="836 1480 1430 1749"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<u>경영전문가</u></p> <p>2. <u>경제관련 단체의 임원</u></p> <p>3. <u>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u></p> <p>4. <u>공인회계사</u></p> <p>5. <u>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 <p>②<u>당해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)·부천시 소속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 및 법 제60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<u>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u></p> <p>④<삭제 2003.01.15></p> <p>⑤<u>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⑥<u>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<u>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</u></p>	<p>② <u>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따른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⑧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 60조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 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의2 (이사장 후보의 추천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2인 이상</u>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 (임기 및 직무)①이사장·이사의 임기는 3년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의2 (이사장 후보의 추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2명 이상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</p> <p>③ 당연직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p>	<p>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지방공기업법」 ----- -----</p>
<p>제13조 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</p>	<p>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14조 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,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</p> <p>제16조 (직원의 임·면)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·면한다.</p> <p>제17조 (사업) ①공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2.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3. 불법주·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4. <삭제2001.04.02> 5. 체육시설관리운영 6.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7.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<p>②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16조(직원의 임면)-----따라-----임면-----.</p> <p>제17조 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2.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3. 불법주·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4. 체육시설관리운영 5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.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<p>② 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 (계리의 원칙)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<u>의하여</u> 계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3조(계리의 원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 (잉여금 처리)공단은 매 <u>사업년도</u>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</p>	<p>제 2 4 조 (잉 여 금 처 리) ----- 사 업 연 도</p>
<p>제25조 (여유금의 운용)공단은 다음 <u>각호</u>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25조(여유금의 운용) ----- -- 각 호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 (감독)① (생략) ②공단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6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각 호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-----</p>
<p>제30조 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파견된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인사평정은 <u>지방공무원임용령</u>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·관리한다.</p>	<p>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-----)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-----</p>
<p>제32조 (시행규칙)이 조례의 <u>시행</u>에 관하여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 3 2 조 (시 행 규 칙) ----- 시행 ----- ----- 필요한 -----</p>
<p>제33조 (준용)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<u>지방공기업법</u> 및 <u>예산회계법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 3 3 조 (준 용)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-----</p>